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17. 12



농림축산식품부

I

개정사유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 중 사육제한 명령제 도입 및 방역 관리 책임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추진

II

주요 개정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
 -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 ②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별표 2)
- ③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 현실화 및 감경기준 개선(안 제1조, 별표2)
 -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 ④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문 삭제(안 제14조의3 삭제)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①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 ②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 ③ 가축방역관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함
- ④ 역학조사반 구성 및 퇴직경찰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조사 의무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역학조사 시 퇴직경찰관 동행 근거 마련
- ⑤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 ⑥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 ⑦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육용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 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안 제22조의5)
 -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7.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 마련
- ㉙ 가축의 폐사율·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Ⅲ | 향후 추진 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협의('17.12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18.1~2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18.2~3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차관·국무회의('18.4월)

참고 1.

살처분 보상기준 개정(안)

구 분	현행	개선
감액경감	① 즉시 신고여부 및 친환경 인증에 관계 없이 양성농장은 80% 지급	① 사군별 최초 신고농장 평가액 100% 친환경 축산 인증 농장은 90%까지 지급
	②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검역본부장·시도지사 등이 농식품부에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자 : 10%	② 살처분 농가(음성판정에 한함) 중 살처분명령, 역학조사, 오염물건의 소각 등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시도지사 등이 농식품부에 추천한 자 : 10%
	③ (신설)	③ CCTV 확인결과 방역노력 인정 시 90%까지 지급
감액강화	① 이동제한 위반 : 5%	①~⑤ 감액기준 강화 - (기존) 5% → (개선) 20%
	② 역학조사 거부 : 5%	
	③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 5%	
	④ 오염물건의 소각·매몰 또는 소독 명령 위반 : 5%	
	⑤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 금지 명령 위반 : 5%	
	⑥ 살처분 명령 미이행 : 5% * 현재 명령 미이행에 대한 감액은 있으나 지연에 관한 감액이 없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	⑥ 감액기준 강화 및 기준 마련 - (기존) 5% → (개선) 1일 지연(10%), 2일(30%), 3일 이상(60%)
	⑦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 10%	⑦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 30%
	⑧ (신설)	⑧ 사육제한 명령 위반 : 100%
감액신설	①,②,③,④ (신설) 방역기준 미준수 시 보상금감액 신설	① 전실 미설치 → 20% 감액
		②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축소 금지 미준수 → 20% 감액
		③ 신발 소독조 미설치 → 5% 감액
		④ ①,②,③ 외의 농장 방역수칙 미준수 → 5% 감액
감액기준 현실화	① 재발생 농장(2년 이내) - 2회(20%), 3회(50), 4회(80)	① 재발생 기간 요건 강화 - (기존) 2년 → (개선) 5년
	② 모든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병성감정 결과 결과와 관계없이 감액 기준 일괄 적용	② 예방적살처분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음성의 경우 감액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③ 신고지연 농장 - 5일 이내(20%), 5일 이후(40), 미신고(60)	③ 축종별 폐사율에 따라 감액토록 객관적 감액기준 마련 - 폐사율 또는 기준을 초과한 날로부터 1일 지연 10%, 2일 지연 20%, 3일 지연 30%, 4일 이상 지연 40%, 미신고 60%
		* 폐사기준(축사당 산출) - 1일 가금 폐사율이 지난 20일간의 평균 폐사율의 두 배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육계) 1일 1,000당 3.5마리 이상 • (산란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저하 • (칠면조) 1일 1,000당 2마리 이상 • (육용종계) 1일 1,000당 2마리 이상 • (산란종계)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 저하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 및”으로,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14조의3, 별표 2 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자목1) 및 별표 3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손실평가액의 전액. 단, 사육제한 명령 위반 시 전액 환수한다.
 -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 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의 경우: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돼지열병·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 1) 시·군·구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농가 :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 전액
 - 2) CCTV 등을 통하여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 3)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생산농장 :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 4) 1),2),3) 외의 경우 :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
 -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병성(病性)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물건 평가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평가액(이하 “물건평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며,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 1) 시·군·구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농가 :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 전액
- 2) CCTV 등을 통하여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
- 3)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생산농장 :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
- 4) 1),2),3) 외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80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이 격리·역류·이동제한되는 기간 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의 경우

- 1) 수의사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 2) 그 밖의 축산 관련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자.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된 도축장(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도축장과 법 제27조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평균 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평균 도축두수) × 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퍼센트(도축장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차. 라목에 따른 가축,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및 사목에 따른 가축의 생산물의 평가액 산정 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염병 최초 발생일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라목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는 제외한다.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의 조치 미이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이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만 해당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1)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미실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여부 미점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 미통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

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 1) 닭 또는 칠면조의 신고 당일 폐사율이 발생농장의 과거 20일간의 평균 폐사율의 두 배 이상이거나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육계: 1일 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폐사
 - 나) 산란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 하거나 3일 연속 계란생산량이 5% 이상 저하
 - 다) 칠면조: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 라) 육용종계: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 마) 산란종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상 폐사율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생산량이 5%이상 저하
 - 2) 1)외의 가축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3) 1)과 2)의 기준에 따라 2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4) 1)과 2)의 기준에 따라 3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5) 1)과 2)의 기준에 따라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바.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 주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자.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축소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육계 및 육용오리에 한함):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3)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4) 1), 2), 3)외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호에 따른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 1) 살처분 명령을 내린 날부터 1일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살처분 명령을 내린 날부터 2일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3) 살처분 명령을 내린 날부터 3일 이상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파.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 1) 오염물건의 소각·매물 또는 소독 명령 위반: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하.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 1) 2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 3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3) 4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거.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감액한다.
- 1)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의 가축평가액의 전액.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자
- 1) 1등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2등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가축 출입기록 작성, 보관 및 전화예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로서 **살처분농가** (음성판정에 한함)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시·도지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 자: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라.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하목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30	200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경고	10	50
사.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200	400	1,000
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200	400	1,000
자.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100	200	500
차.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200	400	1,000
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	200	300

<p>파.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60조 제1항제4호</p>	<p>50</p>	<p>200</p>	<p>300</p>
<p>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p>법 제60조 제1항제5호</p>	<p>100</p>	<p>400</p>	<p>800</p>
<p>거.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p>법 제60조 제2항제3호</p>	<p>50</p>	<p>150</p>	<p>300</p>

<p>너.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p> <p>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p> <p>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p> <p>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p> <p>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p> <p>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p> <p>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p> <p>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p> <p>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법 제60조 제2항제4호</p>	<p>50</p>	<p>150</p>	<p>300</p>
<p>더.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p>	<p>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 2</p>	<p>100</p>	<p>200</p>	<p>300</p>
<p>러.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 3</p>	<p>100</p>	<p>200</p>	<p>300</p>
<p>머.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p>	<p>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 4</p>	<p>100</p>	<p>200</p>	<p>300</p>
<p>버.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p>	<p>100</p>	<p>200</p>	<p>500</p>
<p>서.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p>	<p>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p>	<p>100</p>	<p>200</p>	<p>500</p>
<p>어.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p>	<p>100</p>	<p>200</p>	<p>500</p>

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처.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커.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터.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허.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고.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노.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10	50	1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5	10	50
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로.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모.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보.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소.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초.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3. ~ 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1조(보상금 등) ① ~ ④ (생략)</p> <p>⑤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u>가 지급한다.</p>	<p>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u>」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서 <u>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보상금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 및</u> ----- ----- ----- <u>지방자치단체</u>가 지급하며, 법 제48조제1</p>

1.·2. (생략)

제14조의3(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
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
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
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

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

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

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

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출국할 때 신고서를

항제1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가 전액 --.

1.·2. (현행과 같음)

<삭제>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의 여권
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
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4항제1호 후단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이행기간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닭 또는 오리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채혈, 분뇨 수집등의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방역관리책임자,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방역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방역업체

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2인이상 고용한 업체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은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

·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한 역학조사반원은”을 “의하여”로, “별지 제2호서식”을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 역학조사반 각 1인씩 2인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명예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한 퇴직경찰관을 동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독설비”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소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시설출입차량 표지”로 한다.

제20조의6제3항 중 “교육”을 “교육 및 교육대상자”로 한다.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중 “등록 마크”를 각각 “표지”로 한다.

제22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3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제22조의4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제2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사율 및 산란율

별표 1의3,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및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2, 별지 제1호의13 및 별지 제9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9, 별지 제1호의10, 별지 제1호의 11,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4 및 별지 제7호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6, 제7조의5, 별지제1호의12 서식 및 별지제1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별표1의3 및 별표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의2제10호, 제11호, 제17호, 제18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2의4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p>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p>	
2. 개별기준	
<p>가.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5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p> <p>(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p>	
소독시설	<p>(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p> <p>(나)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p> <p>(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단, 500제곱미터 이하의 한우·육우 사육농가 및 640제곱미터 이하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방역시설	<p>(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p>(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p>

	<p>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돼지 사육업</p>	
<p>소독시설</p>	<p>(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p> <p>(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p> <p>(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단,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마)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방역시설</p>	<p>(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p>(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라) 1천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p>
<p>(3)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p>	
<p>소독시설</p>	<p>(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p> <p>(나) 닭·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p> <p>(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p>

	<p>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p> <p>(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방역시설	<p>(가)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p>(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라)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p> <p>(마)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p> <p>(바)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닭·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p> <p>(사) 닭·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p>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소독시설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

	<p>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p> <p>(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p> <p>(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방역시설	<p>(1) 도축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도축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도축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p>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소독시설	<p>(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p> <p>(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방역시설	<p>(1) 집유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집유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집유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라.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소독시설	<p>(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p> <p>(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방역시설	<p>(1) 당해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당해 시설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p>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p>	
<p>소독시설</p>	<p>(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p> <p>(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방역시설</p>	<p>(1) 당해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당해 시설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당해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p>바.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p>	
<p>소독시설</p>	<p>(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p>
<p>방역시설</p>	<p>(1)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사. 축산법에 의한 종축장의 운영자</p> <p>(1) 종돈업자</p>	
<p>소독시설</p>	<p>(가) 종돈장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p> <p>(나) 종돈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당해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p> <p>(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방역시설</p>	<p>(가)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p> <p>(나) 종돈장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시설	<p>(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p> <p>(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p> <p>(다)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라)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방역시설	<p>(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다)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라)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p> <p>(마)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p> <p>(바)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p> <p>(사) 종계·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p>

	<p>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p> <p>(아)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p> <p>(자)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의 출입로는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농장 구조 등 여건상 불가한 경우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한 것으로 본다.</p>
<p>아. 정액 등 처리업자</p>	
<p>소독시설</p>	<p>(가)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p> <p>(나) 정액 등 처리업 시설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당해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p> <p>(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방역시설</p>	<p>나) 정액 등 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p> <p>다) 정액 등 처리업장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시설 출입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p>
<p>자.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p>	
<p>소독시설</p>	<p>(1)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반이 등을 세차·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p> <p>(2)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p> <p>(3) 방문자 소속·성명·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p>

	<p>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p> <p>(4)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p> <p>(5)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p> <p>(6)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p>
방역시설	<p>(1)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3)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부화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4)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p> <p>(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부화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p> <p>(6) 각각의 부화실 및 병아리실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부화실 및 병아리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화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부화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p>

	(7) 부화실과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차.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소독시설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역시설	(1)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시설의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단,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
4.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5. 사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하되 남은음식물사료는 포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6. 조(粗)사료 운반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료로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4의 제조업자가 이용하는 단미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에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에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7.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 운반하는 차량
9. 퇴비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난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난좌를 운반하는 차량 단,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
11. 가금부산물운반	법 제2조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12. 진료, 예방 접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 또는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3. 인공수정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4. 컨설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5.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6. 기계수리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7. 가금 출하상하 차등을 위한 인력운송	법 제2조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출하상하차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
18.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또는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표지 (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출입차량 표지



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좌측에 등록번호, 우측에 차량번호가 위치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은 노란색(C_0/M_10/Y_100/K_0)으로 한다.

2) 글자색은 검정색(C_0/M_0/Y_0/K_100)으로 한다.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4. 표지의 부착 : 외부에서 확인가능 하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의 사체를 수거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 판단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사체나 병든 가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축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과 사체 보관장소를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가.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마.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을 포함한다)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나.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 등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분변 등을 치운 다음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등의 출입방지 시설을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라. 설치류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캐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 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

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라. 축사 내부·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마.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사.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아.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휴지기를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5. 그 밖에 축종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6]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1.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h2 style="margin: 0;">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h2> <h3 style="margin: 0;">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h3>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Gender	<input type="checkbox"/> 남 Male <input type="checkbox"/>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Tel.)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input type="checkbox"/> 가축소유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nput type="checkbox"/>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nput type="checkbox"/> 수의사 Veterinarian <input type="checkbox"/>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input type="checkbox"/>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input type="checkbox"/>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input type="checkbox"/>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동물사료 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input type="checkbox"/> 원유 수집·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s		
국내 도착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before arrival.			
1)	2)	3)	
국내 도착 전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 before arrival.			
<input type="checkbox"/>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체류·경유 Visit or transit FMD, HPAI, ASF affected countries	<input type="checkbox"/> 우제류(소·돼지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cloven-hoofed animal(cattle, pig, etc.) farms	<input type="checkbox"/> 가금류(닭·오리·칠면조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poultry(chicken, duck, turkey, etc.) farms	
<input type="checkbox"/> 우제류·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cloven-hoofed·poultry) market		<input type="checkbox"/>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 휴대 Carrying animal products including meat, ham and sausage	
<p style="text-align: center;">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f you refuse, interrupt, or avoid submitting this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or submit a false statement, you may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i>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i>.</p>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Name of Declarer			(Signature)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p>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

Entry / Departure Declaration of Persons related to Raising Livestock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Please check the required field [] (앞쪽)(front)

[] 입국 Entry	[] 출국 Departure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 남 Male Gender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input type="checkbox"/>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nput type="checkbox"/>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nput type="checkbox"/> 수의사 Veterinarian <input type="checkbox"/>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input type="checkbox"/>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input type="checkbox"/>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input type="checkbox"/>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input type="checkbox"/> 원유 수집·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s()
------------------	--

여행기간 중 방문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in the list of all the countries where you will visit or have visited during your travel

1)	2)	3)
출국 일자 Date of departure	출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departure	
입국 일자 Date of entry	입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ent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출국 신고를 합니다.

I declare the departure to or the entry from a country where contagious animal diseases brok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Article 7-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such Act.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Name of Declarer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m²)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농장주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농장명	사육축종	사육규모
	소재지		
방역관리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의사 면허번호		신고 사유(채용/해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방역업무를 담당할 방역관리 책임자를 위와 같이 채용(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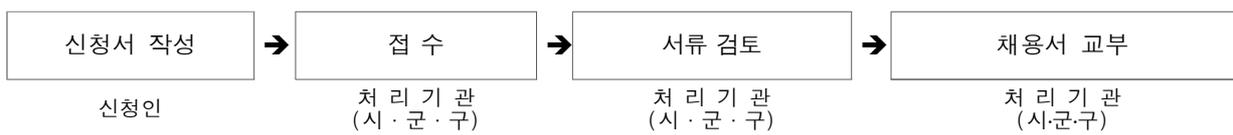
신고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경력증명서 1부
-------------	-------------

처 리 절 차



방역관리 책임자(방역전문가, 방역업체) 채용(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농장주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농장명	사육축종	사육규모
	소재지		
방역전문가 또는 방역업체	성 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수의사 면허번호	신고 사유(채용/해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방역업무를 담당할 방역관리 책임자(방역전문가 또는 방역업체)를 위와 같이 채용(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1. 경력증명서(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만 해당합니다) 1부
첨부서류	2.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만 해당합니다) 1부
	3. 계약서 1부
	4. 전문인력 채용 증빙서류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등록번호 제 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1. 차량번호:
2. 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
3.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4.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5. 사업자등록번호:
6. 생년월일 :
7. 주소(차고지 주소):
8. 운전자 성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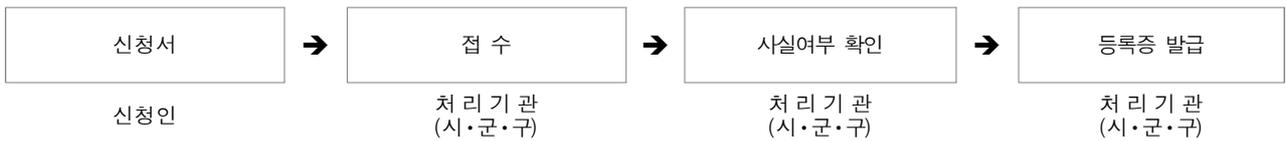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 신청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 다.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반드시 기재합니다.(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
2.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변경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선택)
 - 가. 변경되는 기존 등록내용을 좌측에 기록하고 변경 등록내용을 우측에 기록합니다.
 - 나. 담당공무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사 육 제 한 명 령 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육제한 명령의 내용	사육제한 이유					
	사육 규모			이행기간		
사육제한명령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육제한을 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u>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u>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삭 제</p> <p>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u>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u>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생 략)</p> <p>④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절차 및 방법은 다음</p>	<p>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 ----- ----- ----- <u>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u>----- -----.</p> <p>③-----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②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이행기간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에게 -----

 ----- 시장·군수·구청장이 -----

 -----.

② -----

용(해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채혈, 분뇨 수집등의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방역관리책임자,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

④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

④ -----

----- 시
장·군수·구청장-----

-----.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시장·군수·구청장-----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하여 -----

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생략)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 역학조사반 각 1인씩 2인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명예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한 퇴직경찰관을 동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에 관한 교육)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회수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

에 관한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교육 및 교육대
상자-----
--.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표지-----

-----.

③ -----

----- 표지-----

-----.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

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2. 전실, 울타리, 담장 등 방역시설 또는 설비

3. ~ 5. (생략)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 ④ (생략)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

촉·임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6. (생략)

②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표 1의3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삭제>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

촉·임무 등) ①-----

-----시장
·군수·구청장-----

1. ~ 6. (현행과 같음)

②-----
-----.

1. ~ 2의2. (생 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

-----시장·군수·구청장-----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

-----.

1.·2. (현행과 같음)

3. 폐사율 및 산란율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